2023년도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안내서

2023. 6.



목 차

I. 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사업 목표
-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5. 사업 추진절차

Ⅱ. 사업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2. 과제수행 내용
- 3. 지원조건 등
- 4. 제재 사항

Ⅲ. 평가 절차

- 1. 평가절차
- 2. 평가방법 및 기준
- 3. 기타 사항

Ⅳ. 사업신청 및 접수

-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서류
- 2. 신청 및 접수

П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質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공유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의료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 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 필요성

-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한 체계마련 필요
-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병원정보시스템, AI진단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데이터 활용 전주기 생태계로 조성
- AI기술을 활용한 생활편의 기능 중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체감형 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표

○ 광주광역시소재 병의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과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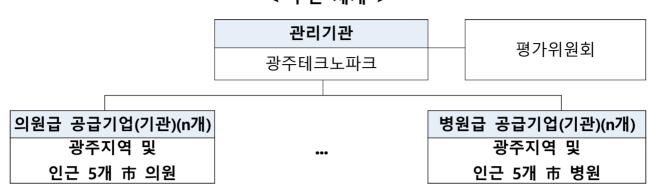
-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8조(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 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사업)
-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 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구 분	주 요 업 무
광주테크노파크 (관리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o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및 선정 o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o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o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의원급/병원급 대상 공급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 등 o 클라우드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등 활용인력 교육지원 o 과제진행 및 현황(진도)·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23. 6월)

- · 광주TP(광주TP 홈페이지)
 -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신청서 접수('23. 7월 중)

- · 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광주TP
 - * 공급기업은 수요의료기관을 매칭하여 제출(플랫폼 도입 확약 등)



선정평가 및 확정 통보('23, 7월 중)

- ・광주TP → 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 발표평가(서류 및 발표에 의한 선정평가, 적합성 검토)
 - * 공급기업 선정시 매칭된 수요의료기관도 함께 평가
 -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공급기업(또는 컨소시엄)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3. 7월 말)

・광주TP → 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사업수행 (~'23. 12월 31일)

- ・광주TP → 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 광주TP-수요의료기관-공급기업 협약 체결



결과보고 및 검수 ('23. 12월 중)

- · 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광주TP
 -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검수 (제출 시기는 추후통보)



사업비 정산 ('23. 12월 중)

- 관리기관(광주TP) → 주관기관(공급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 종료 후 1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 광주광역시 및 인근 5개 시 소재 병의원을 대상으로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플랫폼과 연결하여 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지역 (대상병의원)	o 광주광역시 및 인근 5개시(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에 소재한 병의원(수요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함. 이외 지역 병의원 포함시 신청 불가 ※ 인근 5개시의 경우,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전환 방식만 신청 가능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본 사업의 참여기관이므로 수요의료기관으로 신청 불가함 ※ [참고 2] 기 구축중 또는 예정인 병의원 목록(p11~12)에 명시된 의료기관은 금회 수요 의료기관으로 신청 불가함
사업기간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3.12.31.까지 ※ 모집공고기간 : '23년도 지원사업비 소진시까지 ※ 매월 말일기준 접수결과에 따라 선정평가 추진 여부를 판단 (1차 평가는 7월 中 개최 예정) ※ '25년 사업종료시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제출시, 연차평가를 통해 매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 '23년의 연계를 목표로한 병의원의 경우 공급기업(신청기업)/기관(신청기관)은 반드시 별첨의 '23년도 연계 대상" 병의원 연계목록표"를 제출하여야함 - '23년 연계 병의원은 반드시 사전 협의 완료된 참여 확정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금회 신청(제출)/평가위원회/협약시 연계 병의원 목표갯수와 병의원명, 연계항목, 연계방식 등이 일치해야 함 ※ '24년~'25년 각년도 연계 병의원은 잠정 연계 목표 병의원 수와 병의원명, 연계방식 등을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 사업제안서와 발표자료에 제시요망 ※ '25년 사업종료시까지 장기계획에 따른 공급기업(기관, 컨소시엄 등)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의 각 년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연차평가위원회 개최 前(광주TP에서 별도 안내 예정)까지 '24년과 '25년 병의원 연계목록표와 병의원 참여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4년, '25년 사업수행을 위한 각 년도 연차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연계 병의원 개수 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예정(연차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지원규모	o 당해연도 : 병의원 107개 이상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총 20억원 이내)

	> /24년/107개〉 /25년/107개)로 자저 모표크 최고 이스티 /22 /22 타서 그모
	 ※ '24년(107개), '25년(107개)를 잠정 목표로 하고 있으나, '22~'23 달성 규모 및 해당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24년~'25년 목표는 변경될 수 있음 이 예산범위(당해연도 총 20억원 이내) 내에서 공급기업 단독 또는 기관 단독
지원대상	(또는 기업/기관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 - 수요의료기관(광주지역소재 의원, 병원 등)에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 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 기관, 또는 기업/기관간 컨소시엄 ※ 수요의료기관은 광주지역소재 의료기관을 칭함(의원급/병원급 지원규모 구분) ※ 연계방식은 ①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②병원內 기존시스템은 활용하면서 DATA만을 연계하는 방식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음. 단, 클 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우대함
	o (당해연도, 협약월~'23.12.31.) 총 20억원 이내
	- '24년(3차년도, '24.01.01.~12.31.)~'25년(4차년도, 24.01.01~12.31.)의 경우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중앙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체 연차 평가위원회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음
사 업 비	o 의원급 : 공급기업(기관)의 의료기관 연계 가능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개 의료기관당 10백만원 이내
	ㅇ 병원급 : 공급기업(기관)의 의료기관 연계 가능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1차병원) 1개 의료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 (2차병원) 1개 의료기관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ㅇ 병의원 의료정보를 연계하되 아래의 방식 중 제안
	* 병의원 중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전환 또는 개원의의 신규 도입 적용(컨설팅, 교육, 클라우드 사용환경 구축 등 제공) * 병의원의 기존 시스템은 활용하면서 데이터만을 연계할 수 있는 커넥터 제공 이 현재 병의원에서 의료정보의 백업용으로 보관중인 파일을 표준저장소에 전송 * 의료데이터의 백업 안정성 지원
	o 연계사업(별도 추진 예정)으로 구축예정인 표준저장소에서 제공하는 API를
주요과업	사용하여 연계항목을 전송 * 연계항목은 아래 항목들을 포함하며 표준저장소 설계결과에 따라 연계항목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사업비는 연계항목 및 규모에 따라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업비 규모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023년도 연계 항목(안) ※ 의료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계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항목이 많을 경우 우대
	■ 기관정보 : 의료기관코드, 기관명, 기관주소 ■ 환자정보 :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환자ID,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 방문(내원)정보 : 방문일, 방문 구분(응급 / 외래 / 입원)
	■ 진단정보 : 진단코드(KCD), 진단명 ■ 검사정보 : 검사영상, 판독소견
	o 기업지원을 위한 테스트용 패키지, 연계용 API, 시험데이터를 제공
기타	ㅇ 데이터의 외부 저장에 따른 의료 관련 법령, 규칙, 가이드 및 개인정보보호법
/ I - I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주지역 및 인근 5개 시 소재 의원, 병원 등에 클라우 드기반 의료정보 연계 활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공급기업 단 독, 기관* 단독, 또는 공급기업/기관 간 컨소시엄
 - * 기관 : 비영리 협회, 비영리 단체, 병원, 대학, 연구소 등
 - 수요의료기관*(광주지역 및 인근 5개 시 소재 의원, 병원 등)에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 수요의료기관 : 광주지역 및 인근 5개 시 소재 의료기관(의원급/병원급)
- (지원규모) 의원급과 병원급을 구분하여 지원
- ① (의원급) 의료정보*연계 활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또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적용의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1개 의료기관당 10백만원 이내)
 - * 진료/처방, 검사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데이터 연계
 -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수와 지원금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 ② (병원급) 의료정보*연계 활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또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적용병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1차병원은 1개 의료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2차병원은 1개 의료기관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 * 진료/처방, 검사 등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데이터 연계
 -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의료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 ※ 적용 병원급 의료기관 수와 지원금은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참고1

지역내 병원급(2차병원 이상) 목록

지역	구분	병원	개수(개)	비고
	상급종합병원(3차)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2	3차
광주광역시	종합병원(2차)	KS 기주 본완 티곡국 대망심 왕 광주주주주주주 하해 동래을 상서 남한가 한종한 하해 동래을 상서 남한가 한종단에 보고 상서 남한가 한종단센 보다 하다 하다 한 학주센트 기고 보다 나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기를 받는 기술을 받았다면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았다면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을 받는 기술	23	2차
광양시	종합병원(2차)	광양사랑 광양서울	2	
나주시	종합병원(2차)	나주종합 빛가람종합	2	
목포시	종합병원(2차)	목포기독 목포시의료원 목포한국 목포중앙 세안종합	5	
순천시 여수시	종합병원(2차)	순천(근로공단) 성가롤로 순천중앙 순천제일 순천한국 전남순천의료원	6	
	종합병원(2차)	여수전남 여천전남 여수제일	3	
	합계		43	3차 : 2개소 2차 : 41개소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2023.6.14. 현재)

참고2

기 구축중 또는 예정인 병의원 목록

□ 旣 타 사업으로 구축된 병의원

○ 해당 병의원 : 연합외과의원 등 56개 병의원(아래 표 참조)

○ 연동방식 : 커넥터, 연동내역 : PACS

연번	의료기관명	연번	의료기관명
1	아름다운e치과교정과	28	은행나무한방병원
2	헤아림요양병원	29	광주365재활병원
3	에스케이제이병원	30	광주연세요양병원
4	에덴병원	31	엔탑이비인후과병원
5	우리들내과의원	32	123내과
6	광주중앙영상의학과의원	33	바른김동은신경과
7	신가병원	34	사랑샘병원
8	학문외과	35	메디플라워피부비뇨기과
9	양명요양병원	36	광주수완병원
10	선형유외과	37	청춘신경과의원
11	최승호 내과	38	매곡가족치과
12	양동희 내과	39	한결치과의원
13	천사요양병원	40	한사랑플랜트치과의원
14	백운탑신경과	41	김신경외과
15	연합외과의원	42	이철범이비인후과
16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43	서광병원
17	아주의료재단	44	피카소치과의원
18	효인재활요양병원	45	미바른이치과교정과
19	한사랑병원	46	비전치과의원
20	참편한내과의원	47	러브미치과
21	일곡양지요양병원	48	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
22	굿모닝내과	49	광주모아치과
23	송창훈내과의원	50	광주탑치과의원
24	바른유외과의원	51	하늘치과의원
25	동산의원	52	첨단 박유환 내과의원
26	프라임의원	53~56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북구/광산구보건소
27	박상훈 내과	-	-

[※] 위 표에 제시된 병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旣 타사업으로 추진되어 선정된 목록이므로 금회 1차 공고 접수 시 해당 병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함

□ 1차년도('22.12~'23.3) 공고 및 선정(추진) 병의원

- 해당 병의원 : 두암치우치과의원 등 138개 병의원(아래 표 참조)
- 연동방식 : 커넥터 또는 클라우드, 연동내역 : HIS(PACS 포함)

의료기관	연		의료기관	연	A1-11 A11-1-1		의료기관	연	
소재지역	번	연계 의료기관명	소재지역	번	연계 의료기관명		소재지역	번	연계 의료기관명
	1	두암치우치과의원		48	소명한방병원		나주시	94	즐거운요양병원
	2	반석치과교정과 구강악안면외과		49	운남으랏차마취 통증의학과의원		광양시	95	칠성요양병원
					동등의약과의원 리움여성병원				슬기로운재활병원
	3 4	송정사랑치과의원 누가요양병원		50 51	신가병원(EMR)			96 97	<u>글기도군제월 5권</u> 광주동천병원
	5	구기표 8 8 년 경희삼성한방병원		52	생생마취통증의학과인원			98	화이트(스타힐)병원
	6	새우리한방병원		53	안피부비뇨기과의원			99	세운암병원 개운암병원
	7	메디웰한방병원		54	은병원			100	천단으뜸(튼튼)병원
	8	굿모닝소아청소년과		55	신세계웰빙의원			101	삼화(대운)한방병원
	9	노벨요양병원		56	오봉렬비뇨기과의원			102	광주내과
	10	두암한방병원		57	최정형외과의원			103	권오성의원
	11	다나아의원	71.75	58	뿌리연합의원			104	세종한방병원
	12	다나통증의학과의원	광주	59	호두정형외과			105	차양한방병원
	13	다니엘의원	광역시	60	세브란스통증과		광주	106	어등산 가정의학과
	14	봉선한방병원		61	상쾌한내과		광역시	107	열린 가정의학과
	15	북구우리들병원		62	맑은숨우리내과		- , ,	108	예인한방병원
	16	새나래		63	유병전내과			109	오갑열비뇨기과
	17	서구베스트의원		64	서울성모정형외과			110	제일튼튼의원
	18	성모마취통증의원		65	효정형외과			111	최성란산부인과
	19	속이편한내과		66	우리튼튼의원			112	최세미산부인과
	20	양림의원		67	명내과방사선과의원			113	평동방부의원
	21	예사랑아동병원		68	청춘의원		710111	114	한마음의원
광주	22	임의모형정에전 기		69	우리들의원			115	양산연합의원
	23	유경완내과	_	70	밝은미소의원			116	나라의원
광역시	24	유진한방병원		71	효성연합의원			117	푸른길정형외과
	25	자향한방병원	목포시	72	목포제일의원		광양시	118	광양조은내과
	26	첨단우리병원		73	활기찬의원		여수시	119	여수기독연합의원
	27	첨단제일의원	광주	74	박석홍가정의학과	-	나주시	120	나주박용선내과
	28	퍼스트의원	광역시	75	바른정형외과		광주	121	극동사랑의원
	29	한일병원	순천시	76	바른의원		광역시	122	굿페이스의원
	30	효다움요양병원	남원시	77	미래연합의원		순천시	123	순천센트럴의원
	31	예향한방병원		78	세정한방병원			124	최원내과의원
	32	경희수한방병원		79	연수탑한방병원			125	비쥬여성의원
	33	새미래병원 민상식정형외과의원		80	운천한방병원 요고하바병의			126	수완탑정형외과 서울의드유외과
	34 35		광주	81 82	우리한방병원 봉한방병원			127 128	시물의드유외파 이덕웅소아과
	36	원힐링병원 효인재활요양병원	광역시	83	하남한방병원			128	- 이익중소아파 - 정역학인전설환인원
	37	미소요양병원		84	한마음한방병원			130	친절한신경외과
	38	상그렐라요양병원		85	정양한방병원		광주	131	김성봉외과
	39	열린의원		86	편안손한방병원		광역시 광역시	132	반이비인후과의원
	40	남구효사랑요양병원		87	약수한방병원		9 HVI	133	클로아의원
	41	호남효사랑요양병원	목포시	88	한국한방병원			134	삼성연합의원
	42	소망하나로병원	광주 _	89	동명한방병원			135	가나신경외과의원
	43	진요양병원		90	휴한방병원			136	현대의원
	44	우리한방병원		91	우리한방병원			137	미즈유로여성의원
	45	신통한방병원		92	허그요양병원			138	한가족의원
	46	호남한방병원	목포시	93	효성요양병원				

※ 위 표에 제시된 병의원은 1차년도('22)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선정된 목록이므로 금회 1차 공고 접수 시 해당 병의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함

2 과제 수행내용

- □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
 - 의료정보관리플랫폼 보유기업이 **사업기간 중에 의료기관의 데이터** 백업파일 및 연계 항목을 연계사업(별도 추진 예정)으로 구축예정 인 표준저장소에 전송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지원
 - (의원급) 기관당 최대 10백만원 이내에서 플랫폼 구축비용 지원
 - (병원급) 기관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에서 플랫폼 구축비용 지원
 - · (1차병원) 1개 의료기관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2차병원) 1개 의료기관당 최대 500백만원 이내
 - · 병의원 중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전환 또는 개원의의 신규 도입 적용(컨설팅, 교육, 클라우드 사용환경구축 등 제공)
 - · 병의원의 기존 시스템은 활용하면서 데이터만을 연계할 수 있는 커넥터 제공
 - ※ 플랫폼 구축 비용 중 컨설팅(교육), 클라우드 사용환경구축, 장비 인터페이스 등 일부 지원하며 그 외 비용은 자체부담

<주요 지원 범위(안)>

- ☑ (컨설팅 및 교육지원) 의료기관별로 의료정보 연계를 위한 환경 분석, 적용방안 마련 및 사용을 위한 의료진, 사용자등의 교육
- ☑ (의료장비와 시스템간 연계지원) 도입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의료장비 및 외부 타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솔루션 보유 기업과 협업하여 개발
- ☑ (의료정보연계 환경구축) 표준저장소와 의료정보 표준플랫폼 연 계를 위한 환경구축 지원

지원내용(안)	비고
컨설팅 및 교육	도입 의료기관의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프로세스 설명(교육)
의료장비와 시스템간 연계	대상 장비 분석, 시스템과 연계
의료정보연계 환경구축	데이터 연계를 위한 표준화 및 전송환경 구축
※ 도입 의료기관의 상황에 때	 가라 지원 내용별 비용은 변경 가능

- (공통사항) 각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별 아래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현재 병의원에서 의료정보의 백업용으로 보관중인 파일을 표준저 장소에 전송(백업용 파일을 통해 의료정보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어야 함)하 는 방안을 제시할 것
 - * 의료데이터의 백업 안정성 지원
 - 연계사업(별도 추진 예정)으로 구축예정인 표준저장소에서 제공 하는 API를 사용하여 연계항목을 전송
 - · 연계항목은 **아래 항목(EMR, PACS)들을 모두 포함**하며 표준저장 소 설계결과에 따라 연계항목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2023년도 연계 항목(안)

■ 기관정보: 의료기관코드, 기관명, 기관주소

■ 환자정보 : 의료기관에서 사용중인 환자ID,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 방문(내원)정보 : 방문일, 방문 구분(응급 / 외래 / 입원)

■ 진단정보 : 진단코드(KCD), 진단명

■ 검사정보 : 검사영상, 판독소견

※ 의료기관 및 기업의 사정에 따라 연계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 항목이 많을 경우 우대

※ 2024년 확장될 항목

- 연계 사업인 표준저장소 구축 사업에서 2024년에 정의될 항목)에 대해서 연계를 검토해야 하며, 확장 항목에 대해서 연계 가능 여부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서 형태로 제출함(연계 방안의 구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업에서 별도 협의함)
- · 병의원 설치 커넥터의 경우 병원환경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윈도 우즈, 리눅스 운영체제를 모두 지원해야 함(연계 pc는 제안사가 제공)
- 연계사업(별도 추진 예정)인 "의료AI솔루션" 사업에서 설치 예정인 AI진단지원솔루션에 대해서 활용 연계 방안 제시
- 연계사업(별도 추진 예정)인 "AI시민의료앱"에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요청시 제공
- 기업지원을 위한 테스트용 패키지, 연계용 API, 시험데이터를 제공
 - ·기업지원을 위한 테스트용 패키지는 연계사업으로 구축예정인 "기업지원 Openlab"에서 기업이 해당 의료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의료정보 활용솔루션(서버 및 사

용자 뷰어 포함)을 의미

- 시험데이터는 기업이 활용해볼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를 의미
- (사업비 지원항목) 지원금 사용은 인건비, 사용환경 구축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에 따라 집행·정산(아래의 "사업비 지원항목"은 기초 가이드라인이며, 사업비 계획 수립 및 집행은 붙임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에 따라 추진
 - **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감사)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본 사업의 연차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며 반드시 붙임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개정된 경우 개정본 기준시점)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이 인건비성 경비 -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및 교육 - 장비 인터페이스 개발 - Configuration 및 표준화 적용 이 클라우드 사용환경 구축 이 의료장비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용역비 이 병의원 홍보 및 Promotion 비용 이 회의비, 출장비(과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	물인성 양목 o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사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 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o 임차비,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전문가 자문을 제외한 일체 자문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회계 정산용역비	

3 지원조건 등

-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 (성과물의 귀속) 본 사업의 결과물은 도입 의료기관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지속・활용하여야 하고, 수행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공급기업(기관)의 소유. 도입 의료기관 및 광주광역시/광주테크노파크는 이용권을 소유

□ 클라우드 서비스 증빙제출

- 의료정보연계활용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경우 우대 하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클라우드서비스 판단을 위해 아래의 항목 중 선택하여 제출
 - ① 클라우드 서비스 판단 자료 관련,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인증서 첨부
 - ※ 예시 : EMR 인증서(클라우드 항목 S014포함)(한국보건의료정보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성능확인제(NIPA),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KISA),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클라우드 확인 및 검증(V&V) 시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이외 기타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의 인증서 첨부 가능
 - ② 클라우드서비스 판단 기준표에 의거한 증빙 제출

No	평가항목	요구자료
1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자료(문서, ppt, 카탈로그 & 서비스 종류) 및
	기술 문서	서비스 프레임워트(구성도) 문서자료(매뉴얼)
2	사용자 중심의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자 스스로
	요청기반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할 수 있는 기술 증적 자료
3	범용 네트워크 접속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URL 등
		명시하고, 서비스 접속 ID & PW 제공
4	신속한 탄력성	자원을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확장, 축소할 수 있는 기술 증적
4	선독인 한학경	자료(로드밸런서, 오토스케일링 적용 증적 자료)
	IT 자원 공유	laaaS, PaaS의 경우 VM, container 프로비저닝 여부 확인 기술문서,
5	공동이용	SaaS의 경우 구축된 laaS, PaaS 증적 자료
6	서비스 측정	과금&빌링 관련 정량적 모니터링 결과 & 요금제 증빙자료
7	거미스이 ㅂ아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
/	서비스의 보안성	및 보안사고 시 대응절차

③ ①②번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에 대한 증빙 등 클라우드 서비스로 판단이 가능한 자료 제출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 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ㅇ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의 경우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적용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업(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 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 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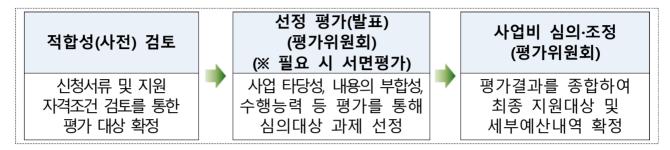
Ш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지원과제 공모	'23.6.15.(목)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Û			
신청서 접수	`23.7.14(금)	· 서류접수(오후 17:00까지)	신청(공급)기업 (또는 신청기관)
Û			
선정 평가	`23.7월 중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Û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3.7월 말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광주TP, 신청(공급)기업 (또는 신청기관)
Û			
협약체결 및 수행	`23.7월 말	∘ 광주TP-수요의료기관-신청기업(관)(또 는 컨소시엄) 협약	광주TP, 신청(공급)기업 (또는 신청기관)

-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사업비 소진시까지 매월 말일기준 접수결과에 따라 익월 평가를 실시할 예정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된 신청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지 역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비고
 정책 부합성	목적 부합성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연계 활용플랫폼 구축사업 이해도, 추진 계획, 추진 방향의 구체성	10
(20)	성과 파급력	·성과 목표 및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10
기술 경쟁력	기술 유용성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연계 활용플랫폼 사용 가치의 적정성 - 제공 인프라 활용 개발 전망 및 기술 수명 - 내부, 경쟁사, 고객 사용자에 대한 유용성(사용가치)	10
(20)	기술 경쟁성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의 차별성 및 적정성	10
인프라	수행능력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과제 수행 역량의 우수성(조직 구성 및 전문성 등) ・의료정보연계활용 솔루션 보유 현황 및 실적	10
경쟁력 (25)	인프라 전문성	· 의료정보연계활용 솔루션 개발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의 인프라 및 보유역량, 지원체계 방안의 구체성 및 차별성	10
	품질관리	•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술지원, 관리방안 등의 구체성	5
사업관리 (10)	관리 적정성	•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10
		· 의료정보연계 데이터항목의 수	5
데이터 활용환경 구축(25)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구 축 노력	• 연계 의료기관의 수(의료기관 도입 및 데이터 연계 정도) ※ 연계 의료기관 수 기준 10개 미만: 1점 / 10~19개: 2점 / 20~29개: 4점 / 30~39개: 6점 / 40~49개: 8점 / 50개 이상: 10점 ※ 컨소시엄의 경우 : 의료기관수/컨소시엄수=연계의료기관수 ※ 1차 병원급 1개소의 경우 : 의원급 10개소로 산정함 ※ 2차 병원급 1개소의 경우 : 의원급 30개소로 산정함	10
	1 74-7	• 연계방법의 적정성(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전환 및 도입 의료기관 수) ※ 연계방법의 적정성 기준 1~10개 미만: 2점 / 10~19개: 4점 / 20~29개: 6점 / 30~39개: 8 점 / 40개 이상: 10점 ※ 1차 병원급 1개소의 경우 : 의원급 10개소로 산정함 ※ 2차 병원급 1개소의 경우 : 의원급 30개소로 산정함	10
		합 계	100

- *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노력과 관련한 평가는 당해연도('23) 목표개수 기준으로만 평가함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또는 유선 연락) 사전에 광주TP 담당자에게 제출(통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 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을 대상 으로 협약 추진
 -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1-158호, 2021. 3. 31. 제정
- 운영비(특근매식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관리용역비, 기타운영비), 직무수행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 평가위원회(심의·조정) 및 광주테크노파크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원금을 받는 모든 사업수행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사업비(지원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업(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 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 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 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지원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 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 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 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 제출
 -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 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협약대상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 정 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전담기관(광주TP)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 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기관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 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 공급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및 광주테크노파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공급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 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 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itp.or.kr) 지원사업공고 →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 서류

	ш¬		
	구분	양식제공	비고
1	사업계획서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0	필수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Х	필수
3	(최근 3년) 재무제표 ('20년~'22년) * '22년 재무제표가 없을 시 '19년~'21년으로 제출 X * '23년 상반기 재무제표 등 제출시 인정 안됨		필수
4	사업수행 기업(기관)(또는 컨소시엄)의 참여의사 확인서	Ο	필수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X	필수
6	중소 • 중견기업 확인서	X	해당시
7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 확인서	0	필수
8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0	필수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율점검표	0	필수
10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Ο	필수
11	현금·현물 출자확약서	Ο	해당시
12	발표자료	X	필수
13	클라우드 서비스 증빙(*공모안내서 16p 참조)	X	해당시
14	기존 클라우드 적용 병원 리스트 또는 확인서	X	해당시
15	병원/의원 연계목록표 * 2023년도를 목표로 하는 병원/의원 연계목록표(2023년만 해당) 필수 제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경우 협약체결시까지 위 연계목록표에 해당되는 병원/의원 도입 확인서 또는 계약서 제출하여 협약 체결 예정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연계목록표의 대상 병의원은 바뀔 수 없으며, 추후 도입 확인서 진위여부 등 참여 병의원 등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시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협약철회, 환수, 제재 조치 등 가능) 단, 협약 이후 병의원의 사정 등에 따라 대상병의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소수 병의원을 대상으로 검토위원회(공급기업/관(또는 컨소시엄)이 협약기간 내 신청))를 통한 변경 가능	0	필수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양식 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itp.or.kr) 지원사업공고
 → 클라우드기반 의료정보 연계・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기한) 공고일 ~ 2023년 7월 14일(금) 17:00까지
 - ※ 신청기업(기관)이 당일 17:00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7:00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7:00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미리 제출 요망
 - ※ 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및 제출처

구분	소속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
사업내용	광주테크노파크	염승엽(책임)	062-602-7272	ysy@gjtp.or.kr
행정사항	광주테크노파크	강현정(전임)	062-602-7278	khj1221@gjtp.or.kr